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9 선고 2022가단5216292 판결 [연대보증금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기동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성

변 론 종 결 2023. 5. 18.

판 결 선 고 2023. 6.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3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7.부터 2023. 6.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67,3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9. C에게 200,000,000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보증기간을 2013. 7. 9.까지로 정하여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4. 2. 24. 500,000원, 2014. 6. 20. 10,000,000원을 각 송금한 후 2014. 7. 23.부터 2015. 9. 25.까지 15회에 걸쳐 1,000,000원씩 합계 15,0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15. 10. 30. 1,500,000원, 2015. 11. 26. 1,5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 7. C, 주식회사 D, E, F를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 중 나머지 원금 180,000,000원, C에 대한 2013. 4. 16.자 대여금 150,000,000원 중 나머지 원금 66,000,000원, C에 대한 2013. 9. 1.자 연대보증금 70,000,000원, C에 대한 2013. 9. 2.자 대여금 30,000,000원, 합계 346,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8. 5. C, F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의 주식회사 D, E에 대한 청구와 C, F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당사자들이 이의하지 않아 위 화해권고결정은 2016. 8. 31.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6가합70174호, 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

라. F는 2016. 8. 4.부터 2018. 4. 6.까지 원고에게 30,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선행소송의 청구금액 346,000,000원 중 160,000,000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지 않았는바, 위 160,000,000원에 이 사건 대여금이 위 346,000,000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52%를 곱하면 이 사건 채권은 83,200,000원이 되고, 여기서 F의 변제금

30,500,000원에 52%를 곱한 15,860,000원을 공제하면 이 사건 대여금은 67,340,000원이 남게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67,34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고, 재판상 화해는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함과 동시에 그 재판상 화해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유효하게 형성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다42880 판결 등 참조).

피고가 2012. 12. 9.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무 200,000,000원을 연대보증한 후 원고가 C, F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나머지 원금 180,000,000원을 포함하여 합계 346,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C와 F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0,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무는 83,236,994원[= 160,000,000원×(180,000,000원/346,000,000원), 원 미만 버림]이 남게 되었다 할 것이고, F의 변제금 30,500,000원 중 15,867,052원[= 30,500,000원×(180,000,000원/346,000,000원), 원 미만 버림]을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원금의 변제에 충당하면 이 사건 대여금은 67,369,942원(= 83,236,994원-15,867,052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나머지 대여금 중 원고가 구하는 67,3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F의 마지막 변제일 다음날인 2018. 4. 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6.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13. 7. 10.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2016. 8. 31.까지의 지연손해금 채무는 위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소멸하였고, F의 2018. 4. 6.까지의 변제금이 모두 원금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주장하였으므로, 2018. 4. 6.까지의 지연손해금도 인정될 수 없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4년 6월경 피고를 만나 ‘이 사건 대여금 중 30,000,000원이 남아 있으니 갚으라’고 요구한 후 피고가 항의하자 ‘25,000,000원만 갚으라’고 하였고, 피고로부터 2014. 6. 20.부터 2015. 9. 25.까지 합계 25,000,000원을 변제받은 후에도 3,000,000원의 추가 변제를 요구하였으며, 이에 피고가 3,000,000원을 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피고의 연대보증채무는 면제되었다.

나. 판단

채권의 포기(또는 채무의 면제)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만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그것이 채권의 포기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기는 하나, 이와 같이 인정하기 위하여는 당해 권리관계의 내용에 따라 이에 대한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을 엄격히 하여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6357 판결 등 참조).

피고가 2014. 2. 24.부터 2015. 11. 26.까지 원고에게 합계 28,5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2016. 1. 7. 제기한 이 사건 선행소송의 피고에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지인 G이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30,000,000원 받을 것이 있는데 5,000,000원 깎아주고 25,000,000원만 받기로 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F가 이 법정에서 ‘2016년경 원고가 F에게 이 사건 대여금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일부 돈을 받고 나머지는 차감을 해주었다고 자랑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원고와 피고의 지인 H의 사실확인서(을 제4호증의 1)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말하였다’는 것일 뿐, 피고의 채무를 면제하였다는 언급은 없다]. 그러나 앞서 든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채권포기서 등 처분문서의 작성 없이 구두로 원금 200,000,000원인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면제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점, ② 피고는 2014년 6월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이 30,000,000원 남아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원고가 2015. 2. 9. 현재 원금 180,000,000원이 남아 있다고 주장한 점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같은

이유로 G의 사실확인서도 믿기 어렵다), ③ 이 사건 선행소송의 소장에 ‘C이 이 사건 대여금과 관련하여 2015. 2. 9.까지 128,0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의 28,500,000원 변제사실은 언급되어 있지 않은 점(원고는 위 28,500,000원이 이 사건 대여금이 아닌 다른 채무의 변제라고 주장한다), ④ F는 이 사건 대여금이 포함된 위 채무 160,000,000원의 연대채무자이고, 그 증언 내용도 원고와 피고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채무면제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2016년경 원고로부터 피고의 채무를 면제해주었다고 자랑하는 말을 들었다는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피고의 연대보증채무를 면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는 변론 종결 후 민법 제436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른 채무 감경면제를 주장하였으나, 채권자가 일정한 사항에 대한 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원이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한 민법 제436조의2는 민법 부칙(2015. 2. 3. 법률 제13125호) 제3조에 의하여 그 시행일인 2016. 2. 4. 이후에 체결하거나 기간을 갱신하는 보증계약부터 적용되므로, 피고의 연대보증채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지원